

18. 宅地開發豫定地區 指定

資料提供：建設部

- 정부는 지속적인 부동산의 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 도시근로자 및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동안 285만호의 주택을 건설코자 하며,
- 건설부는 이에 소요되는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'93. 7 대구, 광주등 11개지구 170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추가 지정하였고
- 이 중 10개지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
- 금회 지정한 택지에는 약 40천호 주택이 건설될 예정으로 무주택서민의 주택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임.

1) 대구용산, 광주상무(2, 3)등 11개지구 1,703천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, 고시

-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,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용산, 광주상무(2, 3)등 11개지구 1,703천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·고시하였음

2)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내 주택건설계획의 공공부문 택지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

-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285만호의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공공부문 신규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정한 것이며,
- 금회 지정된 지구에는 총 40천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무주택서민의 주택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임.

3)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 활성화

- 금회 지정된 10개지구 1,636천평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되므로 지방도시의 택지개발사업 활성화와 계획적인 개발로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,
-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당해지역의 숙원사업인 도로, 상하수도등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.

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현황

단위 : 천평, 호, 인

지 구 명	위 치	면 적	시 행 자	주 택 건 설	수 용 인 구
계(11지구)		1,703		40,237	157,840
1. 대 구 용 산	대구시 달서구 용산동, 죽전동 일원	178	대 구 시 장	6,200	23,320
2. 광 주 상 무 2	광주시 서구 쌍촌, 유촌, 치평동 일원	215	광 주 시 장	5,000	20,000
3. 광 주 상 무 3	광주시 광산구 마북, 서구 치평동 일원	39	광 주 시 장	500	2,000
4. 의 정 부 장 암	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일원	143	의정부시장	6,000	24,000
5. 안 중 현 화	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현화리 일원	278	평 택 군 수	6,000	24,000
6. 평 성 송 화	경기도 평택군 평성읍 객사리 일원	88	"	1,900	7,500
7. 충 주 안 립	충북 충주시 연수동, 안립동 일원	278	충 주 시 장	5,900	23,600
8. 전 주 삼 천 2	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, 효자동 일원	48	전 주 시 장	820	3,280
9. 전 주 효 자 3	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원	67	주 공	5,000	20,000
10. 의 령 동 동	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, 무전리 일원	250	의 령 군 수	2,100	8,200
11. 제 주 노 형 2	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일원	113	제 주 시 장	817	2,940

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절차

